

#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8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9. 4.  
발 의 자 : 문인수 의원  
외 5인

## □ 제 안 이 유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조례 관련 조항의 내용을 법규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 요 골 자

- 윤리특별위원회가 “윤리에 관한 사항”을 심사하는 것을 “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”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,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둘 수 있는 조항인 3항을 삭제함(안 제7조)
- “회의규칙”을 “의회 회의규칙”으로 함(안 제13조)

# 관 계 법 령 발 취

## □ 지방자치법 제50조의2

제50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 
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윤리에 관한 사항” 을 “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회의규칙” 을 “의회 회의규칙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 (특별위원회)</p> <p>①~②(생략)</p> <p>③ <u>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④ <u>의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⑤~⑦(생략)</p> <p>제13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의 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,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회의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7조 (특별위원회)</p> 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 삭 제 &gt;</u></p> <p>④ ..... <u>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</u> .....</p> <p>⑤~⑦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준용규정)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의회 회의규칙</u>..</p>